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검 사 정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31663호 2021. 5. 4. 공포, 2022. 3.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신설되는 의정부지방법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 정원 23명(지청장 1명, 지청 부장검사 2명 및 지청 검사 20명)을 의정부지방법검찰청(부장검사 1명 및 지방검찰청 검사 14명), 대구지방법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부산지방법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대전지방법검찰청 홍성지청(지청 검사 1명), 대구지방법검찰청 경주지청(지청 검사 1명), 대구지방법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1명), 창원지방법검찰청 통영지청(지청 검사 1명), 광주지방법검찰청 목포지청(지청 검사 1명) 및 전주지방법검찰청 군산지청(지청 검사 1명)의 검사 정원에서 각각 이체하는 한편,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과 평택지청에 증설하는 형사부의 지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및 춘천지방법검찰청의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에서 각각 1명씩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00. ~ 2022. 1.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합계의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란 “25”를 “26”으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34”를 “337”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란 “1,789”를 “1,785”로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계란 “64”를 “63”으로,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란 “54”를 “53”으로 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계란 “72”를 “57”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7”을 “6”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란 “63”을 “49”로 하고, 고양지청란 다음에 남양주지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평택지청의 계란 “23”을 “24”로, 평택지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2”를 “3”으로 하고, 안산지청의 계란 “57”을 “58”로, 안산지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5”를 “6”으로 하며, 춘천지방검찰청의 계란 “23”을 “22”로, 춘천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란 “19”를 “18”로 하고, 홍성지청의 계란 “11”을 “10”으로, 홍성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란 “9”를 “8”로 하며, 대구지방검

찰청의 계란 “81”을 “80”으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68”을 “67”로 하고, 경주지청의 계란 “10”을 “9”로, 경주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8”을 “7”로 하며, 포항지청의 계란 “18”을
 “17”로, 포항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15”를 “14”로 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계란 “85”를 “84”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 검사관 “73”을 “72”로 하며, 통영지청의 계란 “15”를 “14”로, 통
 영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12”를 “11”로 하고, 목포지청의
 계란 “17”을 “16”으로, 목포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14”를
 “13”으로 하며, 군산지청의 계란 “18”을 “17”로, 군산지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관 “15”를 “14”로 한다.

남양주지청	23						1	2					20
-------	----	--	--	--	--	--	---	---	--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정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 춘천지방검찰청
3. 평택지청
4. 안산지청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과	
연 락 처	(02) 2110 - 4210